



강 남 구 의 회



수신 강대후 의원 귀하

(경유)

제목 **4·13 지방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(신고) 안내**

1. 감사담당관-5956호(2016.4.19.)와 관련입니다.

2. 4·13 지방의원 재선거(아 선거구)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(신고)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고기한 내 반드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(PETI)에 접속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재산등록 신고 내용

- 신고기준일 : 2016. 4. 14.
- 신고대상자 : 강대후 구의원
- 신고기간 : 2016. 6. 14.限 (신고기준일로부터 2개월)
- 신고사항 : 등록의무자,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의 재산

나. 신고방법

- ①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은행, 증권 등 개인인증서 준비
- ②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(<http://www.peti.go.kr>) 접속
- ③ 메인화면 중앙에 신고서 [작성하기] 버튼 클릭
- ④ 친족 및 재산사항 등 입력
- ⑤ 항목별로 모두 입력 후 [제출] 버튼 선택하여 제출완료

다. 고지거부 허가 신청

- 고지거부 :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
- 신청대상 : 신규 등록의무자
- 신청기간 : 2016. 5. 13.限 (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)
- 신청방법

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(PETI: <http://www.peti.go.kr>) 접속 → 고지거부신청 버튼 클릭
 → 신청구분(허가/재심사 선택) → 친족추가 후 저장 → 신청서 출력
 → 신청서 및 증명자료 스캔 첨부 → 제출 버튼 클릭 → 신청서원본 강남구의회 제출

▶ 고지거부 심사기준은 붙임 “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” 참조

라.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제공 신청

- 신청대상자 :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·비속
- 신청기간 :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
- 정보제공 개시 : 2017년 정기재산변동신고부터 제공
(이번 신고에는 제공되지 않음)
- 신청방법 : 붙임 “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제공 안내” 참조

마.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 : 붙임4 참조

바. 주식매각(백지신탁) 또는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심사 청구 안내

- 붙임 : 1. 재산신고 안내서(PETI 입력방법 등)
2.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
3.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제공 안내
4.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
5.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 안내. 끝.

강 남 구 의 회 의 장

주무관 양만춘 의정팀장 흥남기 구의회사무국장 전결 04/25 이동호

협조자

시행 강남구의회-4673 () 접수 ()
우 06288 강남구 삼성로 154 /
전화 02-3423-8108 /전송 02-3423-8926 / general7@gangnam.go.kr / 대시민공개